

북한 인권 보고서

September 2024

For public use

CSW everyone
free to believe





All illustrations by Emily Paik

목차

This report is available to download in English or Korean: csw.org.uk/NorthKoreaReport2024

CSW와 북한	6	아동 및 교육 관련 법률	17	무속신앙	35
권고사항	7	결론	17	미신 행위와 전통적 신앙	36
북한에 대한 권고	8	국제법적 체계	18	강제 송환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36
유엔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	8	국제법적 책무	18	국가 인가 예배 장소	3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권고	8	세계인권선언	18	앞으로의 과제 및 중점 영역	40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권고	8	국제 조약	18	공동의 방향성과 추진력 촉진	40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	8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	18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 압박	40
라오스 정부에 대한 권고	8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9	탈북민 지원과 역량 활용 방안 모색	41
시민사회에 대한 권고	8	아동권리위원회	19	북한 관련 모든 조치와 논의에서 인권 최우선 고려	41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	8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19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42
유럽연합 및 회원국에 대한 권고	9	지난 10년 간의 변화	23	결론	43
영국 정부에 대한 권고	9	코로나19 팬데믹	23		
조사방법	10	국경 봉쇄	23		
북한의 법적 체계	10	기존 인도적 문제의 심화와 확대	24		
정부의 구조	10	코로나 19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24		
국가 이념	10	기타 경제적 변화	25		
주체사상	10	사적 시장 활동(장마당)	26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1	국제 제재	27		
성분제도	12	부패	28		
헌법적 책무	13	정보 흐름의 변화	28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	외국 미디어 소비 증가	29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	외부 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	29		
노동권	13	광범위한 프로파간다	29		
교육권	13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여건	30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	국제 안보와 군사 무기 확장	30		
차별 금지 원리	13	북한 내 인도적 상황 – 식량보다 군사에 우선	30		
국가 이념의 헌법적 우월성	13	인권보다 안보에 집중되는 국제적 관심	32		
북한의 법률과 정책	14	북한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33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4	기독교	33		
형법	15	기독교 관련 자료와의 접촉	34		
행정처벌법	16	지하교회	35		
인민보안단속법	16				

CSW would like to formally acknowledge the individual supporters and organisations who have generously funded this report. Two of these are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and Stefanus Alliance International.



COI 10주년 보고서 서문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 사회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종교 집단에 대해 억압과 통제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반인도범죄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법 상의 의무는 외면한 채 전적인 면책 하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탈북 기독교인 난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끔찍한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함으로써, 유엔 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송환된 난민들은 북한 정권 아래서 가장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CSW는 북한 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참혹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독재 정권이 초래한 끔찍한 인적 비용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실상을 밝히는 데 헌신해 온 CSW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생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김정은 정권의 가해자들과 방조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데이비드 알튼 경
(Lord David Alton of Liverpool)
런던

서론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되었으며 억압적인 국가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한다.

종교 또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발각되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은 북한의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거나,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학대, 인신매매, 중국에 의한 강제 송환의 위험에 노출되며, 라오스에 도착한 경우에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태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2014년 COI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를 가장 폭넓게 다룬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은 매우 광범위하고 철저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¹

이 보고서는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내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특히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북한 내외부의 변화를 살펴본다. 북한의 경제 상황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가속화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새로운 국내법 도입, 북한으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 흐름의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 자금 제공자들이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있다.

2015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유엔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국제 사회는 COI 권고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의 일상적이고 잔혹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¹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ebruary 2014, A/HRC/25/CRP.1, para 1211





CSW와 북한

CSW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증진을 위해 일하는 인권 단체이다.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CSW의 팀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24년 이상 CSW 활동의 주요 초점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SW는 유엔과도 소통하며, 검증되고 정확한 보고서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국 의회와 유럽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보편적 정례검토 등의 인권 메커니즘에 서면을 제출하여 북한이 국제적인 의제로 계속 논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SW는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적 의회 모임’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북한의 고위 인사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APPG-NK의 공동 의장과 부의장(리버풀의 알톤 경과 퀸스베리의 캐롤라인 콕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7년 CSW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인권 침해를 제시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²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유엔에 COI 설립을 요구하였다.

2011년 9월, CSW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이하 ICNK) 설립을 도왔다. 이 연합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인권 단체들을 모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CSW의 2007년 보고서와 ICNK의 활동은 2013년 COI 설립에 기여했으며, CSW와 ICNK는 모두 2014년 COI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권고사항

북한에 대한 권고

-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 탈북자들에게 ‘조국 반역죄’를 적용하는 것과 중국 및 다른 국가에 탈북자 송환을 요청하는 것을 중단할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대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법적×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 북한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극심한 박해를 종식할 것.
-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
- 미국 북한인권특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 유럽연합 종교자유특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특별절차와 조사 메커니즘들을 방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
-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고, 가족, 변호사, 영사 관헌과의 연락을 허용할 것.
-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
- 북송된 탈북 난민 김철옥 씨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고, 가족과의 연락을 허용할 것.

유엔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

- 가능한 모든 공개적×비공개적 자리에서 북한 정부가 북한 내 모든 사람들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것을 촉구하고, 상기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
-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
-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이를 핵 비확산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것.
- 2014년 2월에 발표된 COI 보고서의 모든 권고사항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에 가능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하도록 촉구할 것.
- 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과 교류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 간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할 것.
- 유엔 특별 절차와 조약기구를 포함한 관련 메커니즘의 북한에 대한 보고에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하도록 촉구할 것.
-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지할 것.
-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 특히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원을 제공할 것.
- 국제적 의무에 따라 난민에게 망명과 보호처를 제공할 것. 특히 북한 요원들이 납치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을 송환하지 않으며,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것.
- 중국과의 양자 회의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난민 협약의 당사국으로써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을 떠난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 특히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
- 북한을 떠난 생존자와 난민들이 사실적×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가해자를 언급할 때 ‘인근 국가들’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중국(또는 다른 책임 있는 국가들)을 직접 명시할 것.
-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에 대해 억류된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관한 질문과 권고를 할 것.
-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에 대해 북송된 탈북 난민 김철옥 씨에 관한 질문과 권고를 할 것.
- 북한 책임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가능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모색되지 않은 모든 사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 책임규명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의 가장 심각한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고 적절한 사법 및 다른 절차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

2 CSW,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20 June 20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권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의 북한 인권 상황을 포함하여 정기 회의를 재개할 것.
-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개최할 것.
- 북한과의 모든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
-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것.
-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COI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할 것.
- COI 보고서의 권고 1225(h)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락 그룹을 설립할 것.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브리핑을 제공하도록 초청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권고

-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임무를 계속 강력하게 수행할 것.
-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
- 북한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에 관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

-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확대하여 제공할 것.
- 북한 주민을 돕는 중국 북부 지역의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것.

라오스 정부에 대한 권고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확대하여 제공할 것.

시민사회에 대한 권고

-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국가들에 촉구할 것.
- 북한의 요원에 의해 자행된 국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

- 국무부는 북한에서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북한의 ‘특별 우려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지정을 계속 유지할 것.
- 국제종교자유대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전역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초청을 요청할 것.
-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
- 중국과 라오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침해를 기록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에 중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

유럽연합 및 회원국에 대한 권고

- 중국 및 관련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의 교류 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에게 중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
-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책 입안자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제재 확대를 고려할 것.
- EU 종교자유 특사는 북한 전역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초청을 요청할 것.
- 중국과 라오스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것.



영국 정부에 대한 권고

- 영국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책임에 따라,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문제를 긴급하게 제기할 것.
-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는 APPG-NK에 지원을 제공할 것.
-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
- 라오스 정부에 대해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들, 특히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침해를 기록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에게 중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

조사 방법

북한 내 종교 신도들의 상황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고립 상태와 외부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의 방침이 주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북한에서 탈출하는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2010년대 매년 수천 명이 탈출하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으로 그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³

북한 내에서의 현장 조사는 여러 위험 -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위험 - 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 그룹의 2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1. 정부 기관, 국제×국내 시민사회단체, 학술 논문, 언론 기사로부터 획득한 정보
2.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23 명의 인터뷰 참여자(탈북민 6명과 북한 전문가 17)가 제공한 정보

표본 크기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질적 데이터를 보고서, 서적, 언론 기사 등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경향이 명확해진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변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CSW가 인터뷰한 북한 전문가 중 다수는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활동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며,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정기적으로 인터뷰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뷰에 응해 주신 모든 분과 탁월한 연구로 귀중한 기여를 해 주신 수많은 연구 기관과 인권 단체들 덕분에 작성될 수 있었다.

북한의 법적 체계

이 장에서는 북한의 법적 체계를 정부 구조, 국가 이념, 헌법적 책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정부의 구조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국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적 특성을 지니며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북한의 주요 통치 기관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국가 언론에 의해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국가와 인민의 모든 영광과 승리의 기치’로 묘사된다.⁴

입법, 행정, 사법 세 기관은 모두 조선로동당에 의해 통제되며, 이들 기관은 김정은의 행정적 도구로 기능할 뿐,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니지 않는다. 북한 정부에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기관의 모든 권력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신격화된 왕조와 조선로동당의 최고 기관인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가 이념

주체사상

북한의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1955년 김일성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후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에 의해 계승·확장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 사상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절대적 전체주의 통치를 초래했다. 일부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이 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



주체사상은 이론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탈북민)

주체사상의 핵심은 북한이 ‘세상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오직 자신의 힘과 거의 신과 같은 지도자의 지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씨 일가에 대한 개인숭배는 국가가 강제하는 종교 형태로 비교되기도 한다.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는 절대적인 충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고 주의를 받는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년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도입하였고,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주체사상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씨 일가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시된다.⁷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최상위의 권위를 지니며, 국내 법률을 형성하며 다른 법률과 헌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다.

[북한에서] 최고의 법은 김씨 일가의 ‘10대 원칙’으로, 그것이 제도적 법률보다 훨씬 강력하다. 네 번째 원칙은 ‘김일성은 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³ NK News, ‘Only 67 North Korean defectors reach South in 2022, second fewest ever’, 10 January 2023 <https://www.nknews.org/2023/01/only-67-north-korean-defectors-reach-south-in-2022-second-fewest-ever/>

⁴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PRCPRK), ‘Report on 6th Enlarged Plenary Meeting of 8th WPK Central Committee’, 1 January 2023

⁵ AP News, ‘Juche rules North Korean propaganda, but what does it mean?’, 30 September 2019

⁶ Vox, ‘Juche, the state ideology that makes North Koreans revere Kim Jong Un, explained’, 18 June 2018

⁷ CSW,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ibid, p. 16.

10대 원칙'의 마지막 개정은 201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김일성'의 이름에 '김정일 장군'이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소식통은 이를 김정은이 자신의 계승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10대 원칙'을 암기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의에서 자신이 이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받는다.⁸ 그러나 다른 보고에 의하면, 10대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 주민보다는 주로 조선로동당 당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⁹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각각 북한 주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 김씨 일가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숭배 요구는 최고지도자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대상에 대한 숭배나 복종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에서 반복되며, 이 원칙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분제도

1957년 조선로동당은 사회-정치적 계층을 기반으로 한 카스트 제도인 성분 제도를 수립했다. 성분제도에 따라 모든 시민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이 세 계층은 1960년대에 51개의 하위 부류로 세분되었다. 이 제도는 세습적이며, 교육, 취업 기회, 의료 서비스, 심지어 식량 접근까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여러 측면을 결정짓는다.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평생 차별에 시달리며,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북한에는] 사회-정치적 분류 제도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회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적대 계층은 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저 자신도 북한에서 차별받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탈북민)

종교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에 귀속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토착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천도교 신자(20세기 한국 범신론 종교 신자), 불교 신자, 로마 가톨릭 신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은 각각 특정한 하위 부류에 속한다. 성분 범주 37에 속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헌법적 책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에 채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북한 「헌법」은 유엔이 정의한 기본적인 인권 중 다수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의 범위와 헌법 조항의 해석은 시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북한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속하는 자유가 아니라 지도자가 인민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진다.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²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제64 조에서도 반복된다. 이 조항은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규정한다.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68조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1966년 「자유권규약」제18조에 명시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종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종교 의식을 열기 위해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주로 종교의 내적 차원보다는 외적 차원에 대한 것이다.¹³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에게 절대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조건부로 만들며, 이로 인해 제한, 침해, 남용의 여지를 남긴다.

노동권

제70조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한다.

교육권

제73조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75조는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권리

제77조에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것 외에 북한 헌법에는 차별 금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종교나 신념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로부터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 이념의 헌법적 우월성

실제로는 위에 언급된 보호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념의 수호가 2019년 「헌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제43조, 제81조, 제85조에서는 각각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건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벗어난 이념과 신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건결히 수호하여야 한다”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들은 인권, 특히 언론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8 Daily NK, 'What Are the 'Ten Principles'?', 9 August 2013 <https://www.dailynk.com/english/what-are-the-ten-principles/>
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April 2023, p.234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4302/1/White%20Paper%20on%20Human%20Rights%20in%20North%20Korea%202022.pdf>
10 NK News, 'The party's 10 principles, then and now', 11 December 2014 <https://www.nknews.org/2014/12/the-partys-10-principles-then-and-now/>
11 Collins, Robert (2012), 'Marked for Life: Songbun – North Korea's Classification System', p. 81 www.hrnk.org/uploads/pdfs/HRNK_Songbun_Web.pdf

12 NCNK,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1 April 2019 <https://www.ncnk.org/sites/default/files/DPRK%20constitution%20%282019%29.pdf>
13 The unconditional protection of the forum internum reflects the principle that forcing human beings to feign a faith that is not authentic or to denounce their deeply held convictions would gravely undermine their self-respect and human rights. Se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Heiner Bielefeldt, Mission to Viet Nam (21 to 31 July 2014)', 30 January 2015, A/HRC/28/66/Add.2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5/014/16/PDF/G1501416.pdf?OpenElement>

북한의 법률과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2023년 3월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울에 기반을 둔 언론 매체인 데일리NK가 전체 41개 조항의 한국어 및 비공식 영어 번역본을 입수해 공개했다.¹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외부 정보의 유입과 내부 정보의 유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성경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 출판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은 공개 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

“최근 우리의 연구원 중 한 명이 팬데믹 기간 국경을 넘은 사람과 실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목표로 한 강연이 많아지고, 가택 수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젊은이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문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 물론 이는 매우 작은 표본에 기반한 것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국경 지역이 아니라,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 북한의 남쪽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법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국가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¹⁶ 제6조는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북한 정부가 ‘반동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엄격한 국경 통제와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신호의 감시가 포함된다.

제27조는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 사람에게 ‘5년에서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선고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동교화형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영양실조, 열악한 생활 조건, 잔혹한 대우, 고문, 간수들에 의한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감자들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제28조는 ‘적대국’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에 관련된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심지어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데일리NK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경이 이러한 불법 자료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2023년에 공개된 법률 전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기타 종교 서적은 북한에서 금지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지에 대한 처벌로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9조는 ‘미신’과 관련된 자료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교화형’과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속 신앙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제34조는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는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연좌제에 따라, 개인의 죄로 인해 무고한 가족 구성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제37조는 자녀가 법을 위반하면 부모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쿼타나와 함께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처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평양에 보냈다. 그러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¹⁸

2023년 1월 17일과 18일에 열린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상”, “제도”,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문화 위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⁹

형법

북한 「형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5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²⁰

북한 「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 사형, 유기 또는 무기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에 따라 외부 정보 등의 허가 받지 않은 자료와의 접촉 및 배포는 금지되며, 최대 10년의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형법은 정책상 자료의 주제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디어의 위협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특히 ‘반체제, 종교적, 김씨 일가를 탐구하거나 공격하는 것, 그리고 모든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가장 높은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제256조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처벌이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가중될 수 있다.

제62조는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1조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가가 승인한 주체사상 이외의 이념이나 신념을 유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콘텐츠의 소지, 사용 또는 배포는 제18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 처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교화형’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제185조에서도 반복되며,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22조는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종교 단체나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의 접촉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 중 다수가 1년에서 10년 사이의 제한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 이른바 ‘완전통제구역’에 평생 수감되며, 특히 종교나 신념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정 기간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14 Daily NK, ‘Daily NK acquires full text of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23 March 2023 <https://www.dailynk.com/english/daily-nk-acquires-full-text-of-the-anti-reactionary-thought-law/>
15 Daily NK, ‘A deep dive into N. Korea’s new “anti-reactionary thought” law’, 15 December 2020 <https://www.dailynk.com/english/deep-dive-north-korea-new-anti-reactionary-thought-law/>
16 Daily NK,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 August 2022, p.5 https://www.dailynk.com/english/wp-content/plugins/pdfs-viewer-shortcode/pdfs/web/viewer.php?file=https://www.dailynk.com/english/wp-content/uploads/2023/03/PDF-%EB%B0%98%EB%8F%99%EC%82%AC%EC%83%81%EB%AC%B8%ED%99%94%EB%B0%B0%EA%B2%A9%EB%B2%95_%EC%98%81%ED%95%9C%EB%B3%B8.pdf&attachment_id=54374&dButton=true&pButton=true&oButton=false&sButton=true#zoom=auto&pagemode=none&_wpnonce=a5d976c776
17 Daily NK, ‘Exclusive: Daily NK obtains materials explaining specifics of new “anti-reactionary thought”’, 19 January 2021 <https://www.dailynk.com/english/exclusive-daily-nk-obtains-materials-explaining-specifincs-new-anti-reactionary-thought-law/>

18 UPI, ‘U.N. presses North Korea for details on executions under thought-crime law’, 27 August 2021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1/08/27/north-korea-executions-un-letter/3641630054110/
19 NK News, ‘North Korea cracks down on speech with new law to counter foreign influence’, 19 January 2023 <https://www.nknews.org/2023/01/north-korea-cracks-down-on-speech-with-new-law-to-counter-foreign-influence/>
20 Law and North Korea, Criminal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1 September 2020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criminal-law-2015?rq=criminal>
21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2019, p. 8

행정처벌법

북한의 「행정처벌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²²

이 법은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경고,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또는 해임 등의 처벌을 나열하고 있다.

종교적 콘텐츠의 보관, 사용 또는 유포는 제152조와 제15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록음,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제작, 보관, 류포하였거나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나 ‘반국가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에 처하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신 행위, 주로 샤머니즘과 관련된 행위는 제21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회적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는 제22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5조는 ‘법일군이 인권유린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처벌은 대부분의 경우 경고 또는 엄중 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이나 로동교양처벌에 제한되며, 이 조항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5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²³

제21조는 ‘인민의 안전 기관은 점술, 진리의 왜곡 또는 왜곡, 이단의 유포와 같은 미신 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조는 ‘국가는 인민의 안전 집행에 있어 인권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동 및 교육 관련 법률

북한은 아동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했으며, 여기에는 「교육법」(1999년 제정, 2015년 최종 개정)²⁴, 북한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 제정, 2013년 최종 개정)²⁵, 북한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제정, 2014년 최종 개정)²⁶이 포함된다.

이들 법률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는 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국가 이념 교육이다. 「교육법」 제3조는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이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양성을 의미한다. 제29조에서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정치사상교육을 앞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은 「어린이보육교양법」제29조와 제43조에서도 표현되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룡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달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보장법」 제16조는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종교 또는 신념을 포함한 표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이 성분에 따라 차별 받거나 처벌 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종교나 신념과 관련하여 부모가 수감, 처형되었거나 탈북한 경우 아동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

북한의 헌법적 책무과 국내 법률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보호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 ‘미신 행위’, 국가와 이념을 해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의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들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법률상 부분적으로라도 보호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이러한 이를 실제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모든 종교와 신념 체계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은 ‘종교와 신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근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따라서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의 강요는 북한 주민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2 Law and North Korea,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10 January 2021
23 Law and North Korea, ‘People’s Security Enforcemen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5)’, 13 September 2021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peoples-security-enforcement-law>

24 Law and North Korea, ‘Education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28 July 2020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education-law-2015>
25 Law and North Korea, ‘Childcare and Education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3 April 2022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childcare-and-education-law>
26 Law and North Korea, ‘Children’s Rights Protection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27 September 2020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childrens-rights-protection-law-2014>
27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Kimilsungism-Kimjongilism and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Thought, and Conscience in North Korea’, 29 July 2022, p. 10 <https://www.uscifr.gov/sites/default/files/2022-07/2022%20North%20Korea%20Report.pdf>

국제법적 체계

이 장에서는 북한의 국제적 책무(즉, 북한이 가입한 국제 협약), 유엔 메커니즘의 견해, COI 보고서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국제적 책무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이 지도자에 의해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김씨 일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²⁸ 차별 금지 원칙은 명백하다.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다.²⁹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³⁰

제3조, 제4조, 제5조는 각각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노예 상태 또는 예속상태’,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제12조는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4조는 국가를 떠날 권리와 다른 국가에서 박해로부터 비호를 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9조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앞서 열거한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민주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다른 권리들도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국제 조약

북한은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을 비준했다: 「자유권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³¹ 이러한 조약들은 「자유권규약」 및 CRC에 규정된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호를 포함하여 여러 인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개인이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강요를 거부하고, 국가가 종교나 신념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며,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인정한다.³²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은 모두 북한이 비준한 협약으로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인정된 권리는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며,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³³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

보편적 인권색인(Universal Human Rights index)은 유엔 인권 감시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조약 기구, 특별 절차, UPR)에서 발행한 모든 인권 권고 사항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³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검색한 결과 두 가지 메커니즘 - 보편적 정례검토, 아동권리위원회 - 의 다섯 개의 문서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발견되었다.³⁵

보편적 정례검토

북한의 세 차례 UPR 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2019년 세 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UPR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12개의 지침과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아일랜드의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나 보복, 감시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권고와, 그리스의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회 내의 대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라’는 권고가 포함된다.³⁶

세 번째 UPR에서 총 262개의 권고를 UPR 실무 그룹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북한은 이 중 63개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평양이 수용하기를 거부한 63개의 권고 사항은 대부분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³⁷ 세 번째 UPR에서 북한 대표단은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³⁸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두 문서에도 북한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관련된 지침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교육 자료와 교과 과정의 광범위한 정치화, 특히 사상적 주입에 대한 지나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종교나 신앙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박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과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권고했다.³⁹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⁴⁰ 위원회는 마이클 도널드 커비 전 대법관(호주), 마르주키 다루스만(인도네시아), 그리고 손자 비세르코(세르비아)로 구성되었다.

2013년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은 김정은에게 COI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국제 난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도 요청했으나, 이 요청 역시 거절되었다.

COI는 상세한 연구 및 정보 수집 과정의 일환으로, COI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 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인권 침해를 경험한 증인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었다. 또한, 수백 건의 비공개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2014년 2월 7일 북한 인권에 대한 COI의 상세한 결과를 담은 3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역사적인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⁴¹

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5문단부터 제171문단 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사상 주입을 다루며, 이는 “자유로운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 발달을 억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197문단부터 제221문단까지는 외국의 영향력, 특히 텔레비전, 인쇄물, 국제 전화 및 인터넷 접근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통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제222문단부터 제239문단까지는 자유를 억압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감시망과 체계적인 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Article 1 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2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bid.*, Article 2

3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bid.*, Article 18

31 OHCHR, ‘UN Treaty Body Database’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7&Lang=EN

3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December 1966, Article 18

3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ember 1989, Article 14 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34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https://uhri.ohchr.org/en/> This database contains over 170,000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12 Treaty Bodies, 44 Special Procedures and all Universal Periodic Reviews

35 Database search conducted 2 June 2023

3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June 2019, A/HRC/42/10, para 126.136 and 126.137 <https://uhri.ohchr.org/Document/File/6458ae54-1c03-4362-9697-d5c504f5d28d/B06B6F58-3091-40D6-9FA2-89387C638EBC>

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ssessment of the 3r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DPRK and the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2 May 2019, p.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9a227828-a123-41c7-b12c-607ed7740133>

3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bid.*, p.8

3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CRC/C/PRK/CO/5, para 21 and 47 <https://uhri.ohchr.org/Document/File/1ab2cb0d-babd-4d1d-937e-49f3dcb77370/D3C35267-A796-4386-AFEE-12117697089A>

4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22/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April 2013, A/HRC/RES/22/13, para 5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hrc_res_22_13.pdf

4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1211, *ibid.*

“제 관점에서 COI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탈북민)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240문단부터제264문단까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표현의 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40문단은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규약」과 CRC에서 명시된 종교의 자유 보호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원하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241문단과 242문단은 국가 이념 이외의 어떤 신앙 체계도 용납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52문단과 제253문단에서는 북한에 존재하는 교회와 사원이 자유롭게 종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예배 장소가 아니며, 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거나, ‘문화 유산’ 또는 ‘문화적 장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OI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심각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기독교를 “마약, 아편, 죄, 서구 및 자본주의 침략의 도구”로 묘사했으며, 보고서는 “기독교 관례를 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법률로 금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국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와 같은 국가 이념에 위협이 되며, 특히 한국×미국과 위협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동유럽 공상권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COI에 증언한 증인들의 증거에 따르면,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특히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59문단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COI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서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

“COI가 설정한 기준과 결과, 그리고 권고 사항들은 전 세계 인권 수호자들에게 거의 성경과 같은 지침으로 여겨지며,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전문가 발언)

COI 보고서는 북한, 중국 및 기타 국가, 국제 사회와 유엔에 대한 여러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허용, 자유로운 언론과 정보 유통의 공간 마련, 성평등과 식량권 보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 사무소 설치 수용, 그리고 사형 제도, 연좌제 원칙, 정치범 수용소 네트워크 및 차별적인 성분 제도의 폐지 등이다. 제1220(g)문단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며,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라오스 등 다른 국가들에 강제 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어떠한 개인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며, 유엔난민기구에 완전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O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목표를 둔 제재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며,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국가별 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제1225(f) 문단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나 안일함에 빠지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COI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은 국제 사회에 자신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COI 이후 이러한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 전문가 발언)

미국의 전 북한인권특사인 로버트 R. 킹은 COI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공식적인 분노와 비난, 긍정적 용어로 북한을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그리고 보고서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조종한 조치의 결합’으로 설명했다.⁴²

2014년 9월 13일 북한의 공식 언론 기관인 조선중앙통신은 COI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141 페이지 분량의 ‘북한 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 주로 국제 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면서 COI를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의 ‘증언’에 기초한 미국과 그 위성 세력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⁴³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보고서의 5장에서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이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종교와 사상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며, “북한 정부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영향을 준 적이 없으며, 종교나 종교인을 반대하거나, 박해하거나, 억압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북한 주민이 “주체사상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은 강요나 강제 없이 이루어진 “인민의 신념과 의지”라고 강조한다.

해당 보고서의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 질서, 건강, 사회 보안, 도덕 및 기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단체들은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이 인권 상황의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2014년 11월 10일 북한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으며, 2016년 12월 6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2017년 5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Catalina Devandas Aguilar)는 북한 방문이 허용된 최초의 유엔 독립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정책상의 형식적 절차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장애인 권리 문제에 대해 유엔 메커니즘과 부분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장애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 정부에게 덜 위협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최소한의 협력조차도 다른 권리 문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⁴⁴

42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ifth Anniversary of the Landmark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21 February 2019, <https://www.csis.org/analysis/fifth-anniversary-landmark-report-un-commission-inquiry-north-korean-human-rights>
43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KN), ‘Report of the DPRK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Studies’, 13 September 2014, p. 103 https://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Report_of_the_DPRK_Association_for_Human_Rights_Studies.pdf
44 CSW,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31 January 2018, p. 32 <https://docs-eu.livesiteadmin.com/dc3e323f-351c-4172-800e-4e02848abf80/2017-11-north-korea-report.pdf>

CSW의 2018년 보고서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영화, 시장 그리고 대중감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덜 심해졌거나 금지되었다는 진술을 담고 있다.⁴⁵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두 명의 인터뷰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실제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에서 일했던 많은 내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은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들었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고문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국제 사회에서 적용된 이러한 비난과 망신 전술 덕분에 북한 내부에서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

COI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2014년 12월 18일 COI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재확인하고, COI 보고서에 의해 문서화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⁴⁶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엔 총회는 2001년 이후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추가했다. 2017년 12월 11일에 열린 네 번째 북한 인권 상황 회의 이후, 이 주제는 설명 없이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2023년 8월 17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핵 비확산 문제와 별도로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47 48}

2015년 6월, 유엔 최고인권대표 제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은 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서울에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립했다. 이 사무소는 모니터링과 문서화 강화를 통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참여와 역량 강화,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⁴⁹

2017년 3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기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 증거 저장소의 설립을 승인했다.⁵⁰ 그러나 이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유엔 이외에도 COI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확장하고, 인권 관련 활동에 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2016년 리버풀의 알튼 경(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적 의회 모임’의장)과 CSW 및 다른 단체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BBC는 한반도에서 한국어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COI가 촉발한 관심과 지원이 북한 인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확대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COI는 발표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2021년 북한인권 특별보고인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점진적인 무관심’에 맞서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COI 보고서가 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0년간의 변화

이 장에서는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변화, 즉 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의 영향, 경제적 변화, 정보 흐름의 변화, 무기화의 증가에 대해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바이러스가 북한 국경을 훨씬 이전에 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코로나19의 발생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약 2년여가 지난 2022년 5월이었다. 평양의 오랜 비밀주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국가에 미친 실제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을 가져왔으며, 인도주의적 상황과 인권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경 봉쇄

“코로나19 팬데믹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더욱 격리하고 고립시킬 수 있었던 최고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

2020년 1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하고, 도시와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⁵² 당시 시행된 많은 법률과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지역 보안 당국이나 인민반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설치된 울타리, 감시탑, 경비초소와 사살 명령 등으로 국경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엄격해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와 인권 침해 상황을 피해 국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⁵³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3명과 67명의 탈북민만이 대한민국에 도착했으며, 이는 2010년대에 매년 수천 명이 도착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⁵⁴

“코로나19 기간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북한 전문가)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경 보안이 강화되면서 탈북 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미 2020년 1월 이전,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일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 제한과 중앙 정부 권력의 강화, 인권 침해의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동안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코로나19는 북한이 이러한 자립 이데올로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기회였습니다.” (북한 전문가)

“김정은 집권기는 국경 보안에 자원을 투입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려는 시도, 밀수와 탈북자들의 이동을 막으려는 시도 [...] 팬데믹은 이전의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한 전문가)

45 CSW,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ibid., p. 23.
4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14’, 21 January 2015, A/RES/69/188,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4/708/89/PDF/N1470889.pdf?OpenElement>
47 Security Council Report, ‘UN Documents for DPRK (North Korea): Security Council Meeting Records’, accessed 13 February 2023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un_documents_type/security-council-meeting-records/?ctype=DPRK%20%28North%20Korea%29&cbtype=dprk-north-korea
48 United Nations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reasingly Repressing Its Citizen’s Human Rights, Freedoms, High Commissioner Warns Security Council’, 17 August 2023 <https://press.un.org/en/2023/sc15387.doc.htm>
49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eoul, <https://seoul.ohchr.org/en/node/92>
5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 March 2017, A/HRC/34/L.23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LTD/G17/069/64/PDF/G1706964.pdf?OpenElement>
51 CSW, ‘CSW welcomes BBC Korean language service’, 18 November 2016,

5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8 October 2021, A/76/392, para 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1/279/99/PDF/N2127999.pdf?OpenElement>
53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Covid-19 Used as Pretext to Seal Border’, 17 November 2022
54 NK News, ‘Only 67 North Korean defectors reach South in 2022, second fewest ever’, 10 January 2023

탈북자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북한 외부로의 정보 유출이 정체되면서 최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1차적 정보가 점점 더 부족해졌다. 동시에 국제기구와 외교관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한층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⁵⁵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통제와 제한의 지속은 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대사관과 다른 유엔 시스템을 추방함으로써 국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전문가)

기존 인도적 문제의 심화와 확대

여러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내 기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확대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우 약하고 취약한 의료 시스템이 팬데믹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약물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이 제공한 백신은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3년 반 이상 중국 간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는 더욱 위협받았습니다.” (북한 전문가)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광범위한 기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⁵⁶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식량안보네트워크는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공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22년 내내 국경 폐쇄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물자에 대한 장기화된 검역 조치로 인해 기본 생필품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강조하며, “취약한 식량 및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⁵⁷ 2021년부터 2023까지 데일리NK와 RFA와 같은 언론은 종종 코로나19 팬데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광범위한 기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2022년 10월 첫 보고서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제한 조치 이후의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⁵⁸

만성적인 영양실조, 의약품에 대해 제한된 접근, 발전되지 않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바이러스의 신체적 영향에 특히 더 취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백신 접종을 매우 늦게 시작했다. 평양은 2021년 12월, COVAX 이니셔티브가 제안한 812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여러 의료 지원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⁵⁹ 북한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백신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2022년 9월이었으며, 정부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하지 4개월 후였다.⁶⁰

북한 국영 언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여 서방 국가들의 ‘실패’를 비난하고 북한의 ‘성공’을 찬양했다. 2022년 5월 22일 북한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했다 [...] 이는 우리 당의 방역 정책이 옳다는 것을 천 번 만 번 입증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⁶¹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 동안 어느 정도 경제에 타격을 감수하는 절충을 했지만,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의 경제에 지역적, 국가적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 감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비공식 시장에 대한 규제나 금지는 많은 가정의 소득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쪽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많은 북한 주민은 시장 활동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팬데믹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 구걸에 의존하는 가족들, 길거리 아이들(꽃제비)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팬데믹이 북한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특히 비공식 시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겪는 재정적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⁶²

비공식 시장의 붕괴는 북한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밀수, 시장 거래, 기타 사적 경제 활동의 위축은 이미 취약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⁶³ 소규모 사적 경제 활동의 감소와 더불어 국제무역(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무역) 감소, 제한된 인도적 지원, 지속적인 국제 제재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

기타 경제적 변화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오랫동안 극도로 불안정했으며, 국제 사회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북한 경제는 국가가 식량과 물자를 배급하는 공공 배급 체계와 국가가 할당한 일자리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지는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 체계의 한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붕괴되어 대규모의 극심한 빈곤(가장 잘 알려진 예로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사적 시장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노숙자와 길거리 아이들(꽃제비)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 ‘The Price is Rights’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 및 증언은 북한이 국민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⁶⁴

55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2 Human Rights Report’, 20 March 2023, p. 33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3/03/415610_KOREA-DEM-REP-2022-HUMAN-RIGHTS-REPORT.pdf
5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World Food Programme (WFP),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19, p. 4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04948/download/>
57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2023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 May 2023, p. 59 <https://www.fsinplatform.org/sites/default/files/resources/files/GRFC2023-hires.pdf>
5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A/77/522, 13 October 2022, para 5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628/57/PDF/N2262857.pdf?OpenElement>
59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3: North Korea’, <https://www.hrw.org/world-report/2023/country-chapters/north-korea>
6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3 October 2022, ibid. para 4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628/57/PDF/N2262857.pdf?OpenElement>
61 NK News, ‘North Korea claims victory over COVID as it boasts of decreasing ‘fever’ cases’, 22 May 2022 <https://www.nknews.org/2022/05/north-korea-claims-victory-over-covid-as-it-boasts-of-decreasing-fever-cases/>

6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3 October 2022, ibid. para 6
63 Hong Jea Hwan, ‘Coronavirus Shock and North Korean Economy’, ibid., p. 5
64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 May 2019, p. 27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untries/KP/ThePricelsRights_EN.pdf

사적 시장 활동(장마당)

북한에서 사적 시장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자리 잡았다. 국가가 공공 배급 체계를 통해 적절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실패하고,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를 통해 받는 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자 북한 주민들은 주로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시장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마당은 북한 내 많은 가정의 주요 소득원이자 경제적 생존 수단이 되었다.⁶⁵

비공식 부문의 급속히 성장은 상반된 영향을 가져왔다. 일부 가정은 시장을 통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더 나은 물질적 안락함을 누릴 기회를 얻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불러왔으며,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국내에서 정권의 연성 권력을 상당히 약화하는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분석했다.⁶⁶ 또한 장마당은 외부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고 기업가적 자립 문화를 조성하며 외국 미디어를 공유하는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⁶⁷

한편, 비공식 시장의 등장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커졌는데, 도시에서는 더 발전된 시장 네트워크와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장마당을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법제화되거나 허용되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불안정한 법적 회색 지대’로 평가한다.⁶⁸ 이러한 법적 회색 지대에서의 활동은 광범위한 부패와 착취의 뿌리를 더 강화했으며, ‘비공식적’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 당국에 뇌물을 주지 못한 경우 (혹은 뇌물을 줄 여력이 없는 경우) 체포, 기소,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

사적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여성들이며, 그들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비록 시장 활동이 일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성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역 관리들과 시장 관리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여성들에게 뇌물이나 성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보고도 있다.⁶⁹



“1990년대 대기근 시절부터 여성들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으로 체포되고 처벌받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전문가)

지난 10년간 시장 활동이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후 정부가 도입한 국내 이동 제한과 시장 단속 조치 등의 제한 조치로 성장이 다소 저해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참조). 2022년 7월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생존을 위해 사적 시장 활동에 의존’해 왔지만 2020년 이후 엄격한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활동이 저해된 ‘개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특별히 우려’를 표명했다.⁷⁰ 이러한 가정은 가계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식량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대기근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북한 정부 없이도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공 배급 체계가 붕괴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 중국과의 거래, 중국으로의 왕래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국경 폐쇄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다시 정부의 체계에 의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국제 제재

2006년 10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해 중무기, 미사일 관련 물자, 일부 사치품의 공급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유엔, EU,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무기 제조, 사치품, 식량 및 농산물, 국제 금융, 항구 및 선박, 여행, 자산 동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해 왔다. (정책상 이러한 제재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지난 10년간 엄격해졌으며, 특히 2017년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 더욱 엄격해졌다.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가 각각 2017년 8월, 9월, 12월에 통과되었다).⁷¹ 2022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EU, 미국 및 기타 동맹국들이 제재를 더욱 확대했다. 유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되었다.⁷²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체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 등의 여러 전문가가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은 강화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의 강화된 시행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행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⁷³ 전현직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은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및 인권 상황, 특히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과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

⁶⁵ NK Hidden Gulag, *ibid.*

⁶⁶ CSW,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ibid.*, p. 5

⁶⁷ NK Hidden Gulag, ‘Jangmadang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10 April 2021 <https://www.nkhiddengulag.org/blog/jangmadang-marketization-in-north-korea>

⁶⁸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16, *ibid.*

⁶⁹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 May 2020, A/HRC/43/58, para 35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20/108/74/PDF/G2010874.pdf?OpenElement>

⁷⁰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9 July 2022, A/77/247, para 29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597/60/PDF/N2259760.pdf?OpenElement>

⁷¹ Hong Jea Hwan, ‘Coronavirus Shock and North Korean Economy’, 12 August 2020, p.2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271a3667-e0ca-4741-91fd-63d6388ca0ec>

⁷²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olds Landmark Debate on Security Council’s Veto of Draft Text Aimed at Tightening Sanctions again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June 2022 <https://press.un.org/en/2022/ga12423.doc.htm>

⁷³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14 October 2020, A/75/388, para 5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0/266/19/PDF/N2026619.pdf?OpenElement>

부패

부패는 사법 체계, 구금 시설, 그리고 직장을 포함하여 북한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 CSW의 2018년 보고서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영화, 시장, 그리고 대중감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명 이상의 응답자⁷⁴ 중 거의 절반이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북한에서 뇌물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⁷⁵ 최근에 발표된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도 이러한 부패의 고질화와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⁶

심화되는 부패 양상이 인권 상황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뇌물이 외국 미디어의 밀반입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 정부의 정보 유입 차단을 우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뇌물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하거나 더 나은 생활 수준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뇌물을 통해 구금 중의 특별 대우, 군복무 면제, 특정 직업 확보 또는 회피, 임의적 구금, 고문, 강제 노동 등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⁷⁷ 그러나 이러한 뇌물 관행은 사회를 점점 더 양극화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며,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인권이 개인의 경제적 여력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만든다.⁷⁸

정보 흐름의 변화

북한에는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내의 모든 언론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며,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외부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2017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강화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도 외부 정보를 접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⁷⁹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가장 광범위한 수단 중 하나는 라디오이다. 크레천, 리, 투호이의 정보 역학 및 디지털화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외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자국에 관한 뉴스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국 라디오가 최고의 선택이며, 때로는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⁸⁰ 미국 국무부는 2022년 12월에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최대 15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정보 차단을 돌파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⁸¹ 미국의 VOA, BBC, RFA,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는 모두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외국 미디어 소비 증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여러 보고서와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여전히 외국 미디어 소비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파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북한 전역에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기술 발전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USB와 마이크로SD 카드는 이전에 사용하던 DVD와 VHS보다 밀반입과 은폐가 용이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디지털화가 확산됨과 함께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무제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고, 국경 너머와 통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개인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강화된 것도 변화의 원인일 수 있다. 또한, 뇌물 관행의 확산은 처벌의 가능성을 줄이는 추가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 정보는 기본적인 인권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등 북한 내부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CSW의 2018년 보고서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영화, 시장, 그리고 대중감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견해가 더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응답자의 44%)이 덜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응답자의 1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외국 정보가 사람들의 시각과 의견, 특히 한국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⁸²

외국 미디어에 대한 단속 강화

“북한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북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를 단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앞서 언급한 외국 미디어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제한을 완화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북한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국가로 유입되는 정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와 비사회주의적 또는 반사회주의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은 여전히 강력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안 당국은 북한 주민들과 집에 대한 수색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한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와 엄격한 인터넷 접근 제한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기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휴대전화 스크린 샷을 간헐적으로 촬영하는 ‘Traceviewer’와 ‘Red Flag’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인민반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새로운 율타리와 경비탑 설치, 보안 인력의 증가, 감시 카메라의 증가 등 국경 보안 시설이 확충되거나 강화됨에 따라 USB나 마이크로 SD카드에 포함된 정보를 북한 내로 반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북한 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된 미디어 매체가 국경 지역을 넘어 내부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정보 유입을 단속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은 ‘적대국’, 특히 한국과 미국의 책, 비디오, 노래 등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사형에 이르는 극단적인 처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통제를 위협하는 외국 정보와 외국 미디어를 단속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광범위한 프로파간다

북한은 외국 미디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선전(프로파간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언론 매체는 로동신문(신문), 조선중앙방송(라디오), 조선중앙TV(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중앙통신사(통신사 및 온라인 사이트)이다. 이들 매체는 조선로동당의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주체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검열된다.

일부 공식적인 언론 보도가 외국 소식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 역시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조선중앙방송의 외국 소식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와 분쟁, 인류의 고통에 크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⁸³ USB 드라이브, 라디오 방송 또는 국경을 넘는 휴대전화 통신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미디어 체계의 영향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⁷⁴ Respondents included Nor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or Europe; the UN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rganisations run by North Korean escapees; South Korean officials and experts; academics; international journalists; and South Kore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s and faith-based organisations.

⁷⁵ CSW,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ibid.*, p.7

⁷⁶ For example: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2 Human Rights Report’, 20 March 2023, p.2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3/03/415610_KOREA-DEM-REP-2022-HUMAN-RIGHTS-REPORT.pd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September 2017, A/72/394, para 39-4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7/290/81/PDF/N1729081.pdf?OpenElement>;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 May 2019, p. 19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untries/KP/ThePriceIsRights_EN.pdf;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2/index/prk>

⁷⁷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8 July 2021, A/76/242, para 24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1/208/98/PDF/N2120898.pdf?OpenElement>

⁷⁸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bid.*, p. 2

⁷⁹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bid.*, p. 2.

⁸⁰ Nat Kretchun, Catherine Lee, Seamus Tuohy, ‘Compromising connectivity: information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a digitizing North Korea’, 2017, p. 10 <https://seamustuohy.com/files/Compromising-Connectivity-Final-Report.pdf>

⁸¹ NK News, ‘US allots \$1.5 million for projects to send outsid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14 December 2022 <https://www.nknews.org/2022/12/us-allots-1-5-million-for-projects-to-send-outside-information-into-north-korea/>

⁸² CSW,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ibid.*, p.13

⁸³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ibid.*, p. 25.

“정권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도움을 구걸하면서도 여전히 최악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여건

“시진핑이 10년 전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 지난 8년 동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북한 전문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종교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20년 1월 이후의 코로나 제로 정책의 여파로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를 돕는 종교 단체와 선교사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었다. 많은 선교 단체가 위험 때문에 중국을 떠나야 했으며, 여러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2016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인터뷰 참여자의 선교 단체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소속을 가진 인터뷰 참여자 다섯 명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 중 상당수가 선교사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활동과 북한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민의 상황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악은 팬데믹과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으며, 중국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도 상당 부분 차단되었습니다.” (북한 전문가)

“우리가 현장에서 접촉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추방되었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북한 전문가 발언)

국제 안보와 군사 무기 확장

지속적인 제재와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은 군사 방어와 무기화를 점점 더 우선시해왔다. CNS 북한 미사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0회의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이 기록된 반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123회의 성공적인 실험이 기록되었다.⁸⁴ 2022년에는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42회의 성공적인 실험이 실시되었다.

북한 내 인도적 상황 - 식량보다 군사에 우선

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우선순위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도적 대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한 정책연구소는 202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5억 6천만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같은 해 식량 부족분은 4억 1천7백만 달러로 추산했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이 식량과 농업에 쓰였다면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⁸⁵ 북한은 군사 확장을 위해 재정 자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적 자원도 전용했으며,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사 규모를 갖고 있다. 즉,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동력에서 제외되고 있다.⁸⁶

“북한에서는 의무 군복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20대를 전부 북한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평양에서 군 복무를 했지만, 심지어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도 북한 군인은 매우 취약합니다. [...] 항상 배가 고프고 비극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북한 탈북자)

⁸⁴ The Nuclear Threat Initiative,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https://www.nti.org/analysis/articles/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
⁸⁵ Korea JoongAng Daily, 'North Korea spends money it needs for food on missiles', 12 December 20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12/12/national/northKorea/Korea-North-Korea-food-insecurity/20221212190148616.html>
⁸⁶ The Korea Post, 'North Korea ranks 4th in the world in military size with 1.2 million troops', 11 January 2023 <https://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6#:~:text=North%20Korea%20ranks%204th%20in,million%20troops%20%2D%20The%20Korea%20Post&text=North%20Korea%20ranked%20fourth%20in,actual%20combat%20power%20are%20separate>



인권보다 안보에 집중되는 국제사회의 관심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⁸⁷과 스탠포드대학 출판부(Stanford University Press)⁸⁸, HRNK⁸⁹와 같은 단체들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위기보다 핵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인권 문제를 배제한 채 무기화에 집중하는 경향은 국제 언론 보도와 양자×다자 간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문제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권 문제를 시급하게 다시 의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0년간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 안보 문제에 가려져 왔다.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2023년 3월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안보 목표와 인권 간의 국제적 상호 연계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평화와 안보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접근 방식이다. HRNK는 과거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교류했던 사례를 들며, ‘[미국] 행정부는 소련 지도자들과 핵무기 진행하면서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자×다자 간 수단을 찾았다’고 강조했다.⁹⁰



북한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북한 전문가)

“우리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김일성만이 유일한 종교입니다.” (탈북민)

“주체사상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탈북자)

“비참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는 극심하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에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선전과 다른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CSW와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기독교

북한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다 적발되거나 의심받는 사람들은 고문, 정치범 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의 정확한 성격은 범죄의 성격과 당사자의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김정은 집권 하에서 지난 10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예전과 같은 정도로 계속되거나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자신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불충한 존재로 여기면서 기독교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가능한 한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생각하며, 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례에 따르면, 종교를 실천하거나, 종교적인 자료를 밀수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성경과 같은 종교적 자료와 접촉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은 반기독교 프로파간다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한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 ‘간첩’ 이자 ‘국가의 적’이라고 교육받는다. CSW와 인터뷰한 탈북민 두 명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나눠준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살인자’로 불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김정은 집권 하에서 모든 종교와 신앙이 억압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가 억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이념이 주체사상과 상충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가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활동 등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활동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⁸⁷ The Wall Street Journal, ‘To Disarm North Korea, Focus on Human Rights’, 5 March 2023 <https://www.wsj.com/articles/to-disarm-north-korea-focus-on-human-rights-information-campaign-kpop-prison-camp-kim-jong-un-propaganda-24b22071>
⁸⁸ Stanford University,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Conundrum: The Role of Human Rights in Policy Toward the DPRK’, 29 October 2021 <https://fsi.stanford.edu/news/how-to-solve-north-korean-conundrum-human-rights-policy-dprk>
⁸⁹ HRNK, ‘Ten Practical and Specific Measures for Advancing Human Rights i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para 1 <https://www.hrnk.org/publications/policy-recommendations.php>
⁹⁰ HRNK, ‘Ten Practical and Specific Measures for Advancing Human Rights i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ibid.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는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김일성주의와 상충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둘째, 지하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종교 권리 침해 국가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북한 전문가)

네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10대 원칙’과 십계명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김씨 일가가 유일한 숭배와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탈북민은 찬송가나 찬양의 선율 사용하되 가사를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꾼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네 번째 원칙은 ‘김일성은 신과 같다’였습니다. 당신은 김일성이 신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특히 기독교를 강력하게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탈북민)

“국가의 조정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조정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되며, 허용될 수 없습니다.” (북한 전문가)

“김정은 정권은 가치와 충성도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독점권이 깨졌을 때 [...] 내가 국가의 계산과 무관하게 유용하게 여겨질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에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됩니다.” (북한 전문가)

기독교 관련 자료와의 접촉

북한에서 종교 관련 자료, 특히 성경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종교적 문서와 접촉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수감, 그리고 공개 처형된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내 주민들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W와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종교적인 자료와 접촉했거나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된 자료와 접촉하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와 같은 자료와 연관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의 오락물과 영화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종교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성경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읽거나 자료와 관련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에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가장 강한 부정적 피드백은 어떤 종류의 종교적 요소가 포함된 미디어에 대해 나타납니다. 단지 언급만 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민감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을 거야. 보고 나서 불태워야 할 거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장 전복적이고, 가장 선동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 자료를 다루고 특히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이 보고되면 간첩으로 간주됩니다.”

CSW와 인터뷰한 두 명의 북한 탈북자는 성경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은 가족들이 강제로 실종된 사례에 대해 진술했다:

“강제 실종은 북한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반 친구의 가족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이 지붕에 작은 성경책을 숨겨 놓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탈북민)

“제 아내의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 성경을 북한으로 가져와 할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북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태우려고 했지만, 한 시간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할머니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아버지도 북한 경찰에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제 아내와 제 아내의 남동생, 그리고 제 아내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탈북민)

세 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 내에서 기독교 관련 자료가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이러한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봉쇄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 참여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북한 내부와 북한 주민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참여자는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북한 당국의 정기적인 가택 수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집을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여 성경을 포함한 자료를 더 잘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현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적합한 시기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

종교적×비종교적 배경을 가진 여덟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에 존재하는 일종의 ‘지하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 지하 교회는 주로 북한의 서부 지역을 따라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지하 교회는 매우 작은 규모이거나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 탈북민이 “그의 지하 교회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 가족은 성경을 암송했고, 친구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기 전까지 동급생이나 교사에게는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북한의 상류층 사회에도 기독교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모든 기독교인이 농촌의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했다. CSW와 이야기 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지하 교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종교 자료의 전파와 전도는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내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한 인터뷰 참여자는 지하 교회의 활동이 주로 성경을 읽고 라디오를 통해 종교 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무속신앙

2021년 보고서에서 한미래(Korea Future)는 1987년부터 2019년까지 무속신앙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 277건을 분석한 결과 무속신앙 신도들이 임의 구금, 강제 노동, 공정한 재판 거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⁹¹ 이 보고서는 기독교와 무속신앙 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침해가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한 체계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의 일부’라고 강조했다.⁹²

91 Korea Future, ‘Persecuting Faith: Document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orth Korea’, 27 October 2021, <https://www.koreafuture.org/s/Persecuting-Faith-Documenting-religious-freedom-violations-in-North-Korea-Volume-2.pdf>
92 Korea Future, *ibid.*, p. 5.

미신 행위와 전통적 신앙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차단했지만 [미신], 특히 점쟁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찰관들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탈북민)

미신 및 미신 행위는 북한에서 제법 널리 퍼져 있다. 길일, 성묘, 점, 추석 조상 숭배와 같은 미신적 행위와 전통적 신앙은 일반적으로 정권에 의해 덜 문제시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북한에는 미신이 존재하지만, 그것도 불법입니다.” (탈북민)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만나는 것에 대한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도 북한 정부가 나라 안에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비사회주의적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 난민들과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뷰 하는 한 인물은 CSW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이 종교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종종 점, 무당, 미신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신적 활동에 대한 단속에 관한 증언이 기독교에 관한 증언보다 더 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기독교에 비해 미신이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처벌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한 증언이 더 많이 들린다는 것은 처벌이 덜 심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 행위로 노동교화소나 수용소에 가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들을 수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문가)

강제 송환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북한에서 강제 송환되면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포르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까?’입니다.” (탈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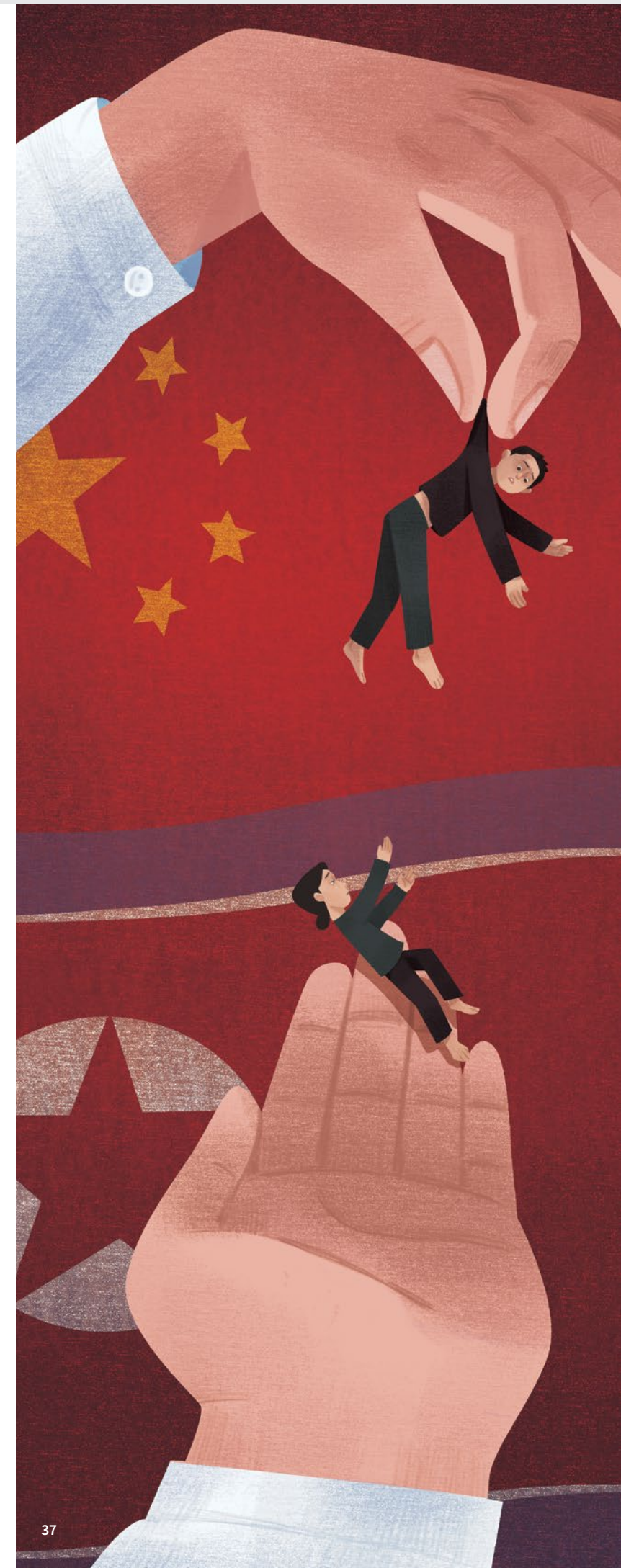
강제 송환된 난민들은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는데, 이는 그들이 한 행동이 배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이며, 그 결과로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북민)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는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송환된 북한 주민에게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이다. 경제적 또는 무역 목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경우 비교적 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사람이나 교회, 선교와 접촉한 것이 밝혀지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면, 그들은 몇 달 동안 심문과 조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노동교화소나 교화소에 3년간 수감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송환되면 주로 먼저 수용소에 보내져 심문을 받고,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 노동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있었던 경우, 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몇 년 정도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경우, 또는 이미 가족 중 누군가가 남한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7명은 송환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 및 중국 감옥 내의 스파이들은 송환된 사람의 체포 경위와 중국 내에서의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전달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 2명은 중국에서 송환될 당시 송환되는 사람들이 그룹별로 나뉘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거나, 기독교 선교사나 교회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범’ 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사와 처벌을 받기 위해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CSW와 인터뷰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 전달하는 문서에 다른 색의 도장을 사용하여 교회와 접촉한 사람들을 표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주민들은 송환 시 다른 주민들과 분리되고, 정치범 수용소나 무기징역, 종신형 등 더 가혹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정치범 수용소 자체에서 탈출하지 않는 한, 증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들은 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구금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북한에서 조직화된 종교 기관에 접근했거나 종교를 실천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

강제 송환을 경험한 적 있는 한 인터뷰 참여자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조사실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즉시 교회에 간 적이 있는지,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혹은 중국에 있는 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관리들은 송환된 아이들의 손끝에 두꺼운 굳은살이 있는지 확인했다:

“경찰은 이 아이들에게 손바닥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 아이들의 지문에 두꺼운 층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 기도한 집에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탈북자)

국가 인가 예배 장소

“평양에는 교회가 있고, [...] 몇몇 불교 사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의 자유의 상징으로 존재하지, 사실 종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거나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가면 처벌을 받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나 사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탈북자)

평양에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국가가 인가한 예배 장소가 몇 군데 있다. 이 건물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자유롭게 종교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인터뷰 참여자 두 명은 일부 참석자들이 실제 종교 신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평양의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성경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국가 인가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람들로, 이들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선택된 그룹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전문가)

“또한 사람들이 평양의 교회에 갔을 때, 신학적으로 설교가 실제로 꽤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김일성에 대한 연관성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평양의 국가 인가 예배 장소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며, 국제 사회에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 외국인이다.

“평양에 있는 교회, 특히 봉수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평양에는 봉수 교회가 있는데, [...] 남한 목사들과 다른 서구 국가의 목사들이 방문할 때만 사용됩니다. [...]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탈북자)

“북한은 국제 사회에 보여지는 이미지에 매우 민감하며, COI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세요, 이 종교 기관들을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런 교류를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항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북한 전문가)

Key events in 2024

정책의 변화

2024년 초 북한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김정은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국가의 주적으로 선언하였으며,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임을 확고히 하도록 북한 주민들을 교육교양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정은은 모든 남북 간의 소통을 끊고 평양의 통일 기념탑을 파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을 별도의 독립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의 유지해 온 기존 정책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과 관광을 담당해 온 세 개의 북한 정부 기관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급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북한 군대는 미국 태평양 연안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에만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정교한 전투기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가 주요 군사 자산이다. 2024년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는 수중 드론과 순항 미사일과 관련된 일련의 시험도 실시하였다. 2023년 11월에는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켰다. 국제 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위성 및 군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된 무기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아 왔다.

제55차 인권이사회 이후 권고사항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⁹³ 이 결의안은 볼커 투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2025년 9월에 열리는 제60차 회의에서 2014년 COI 설립 이후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와 COI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억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북한의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북한 국민의 접촉 과 행위에 대한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국제적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3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on 4 April 2024, A/HRC/55/L.19

앞으로의 과제 및 중점 영역

공동의 방향성과 추진력 촉진

“COI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온 이후로, 일반적으로 추진력을 잃었고 그 이후로 강력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

“특히 COI 이후로 [북한 인권] 커뮤니티가 하는 일에 대해 실질적인 회의가 존재한다. [...]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회원국들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조치를 취하려는 의욕이 감소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

CSW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대화를 나눴고, 이들은 COI 이후 10년 동안 동력과 방향성이 약화되었다고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COI가 설립되기 전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펼쳤으며,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몇 년 동안은 COI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옹호 활동에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COI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사회가 대다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 있으며, 이 운동이 다시 활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과 충분하지 않은 자금 지원 기회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기도 했다.

CSW와 대화한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특별히 COI 10 주년을 전후로 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공동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난 1년 정도 동안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보다 더 통합된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반복하거나 경쟁하는 것보다는 공동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북한 전문가)

2023년 10월 현재, 201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북한인권특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북한 인권 업무를 위한 네 개의 주요 직책이 모두 채워졌다.⁹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 직책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 압박

강제 송환 문제는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유엔은 강제 송환의 가해자와 관련하여 ‘인접 국가’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야 한다. 유엔과 정부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도록 계속 촉구하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이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강제 송환은 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미국 및 런던 자본 시장 접근 등을 이용하여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북한 인권은 중국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역량을 활용할 방안 모색

북한 외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장학금, 리더십 훈련,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에 투자해야 한다.

CSW와 대화한 네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 외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 원조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 정부에 직접 제공되는 재정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 내 친척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외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돈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정부에 돈을 보내는 대신 북한 난민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 신호가 전달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부유하다. 나는 외부에 있으며 당신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둘째, ‘외부 세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셋째, ‘당신도 탈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전문가)

“[국제 사회는] 북한 탈북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북한 탈북자들을 사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정권에 큰 문제가 될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

북한 관련 모든 조치와 논의에서 인권 최우선 고려

“초점은 항상 정치적 및 군사적 안보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권은 주변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그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전문가 발언)

유엔 회원국과 기관, 국제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관련된 행위 주체들은 북한과 관련된 대화에서 인권이 우선시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려나거나 안보 문제에 밀려 2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 주체들은 북한의 국제적 안보와 인권 문제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하여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핵 비확산 문제와 함께 매년 유엔에서 논의되도록 하여야 한다.

⁹⁴ James Heenan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OHCHR Seoul in September 2022. His predecessor, Signe Poulsen, had left office in July 2020. Ambassador Julie Turner was sworn in as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n October 2023. Her predecessor, Robert R. King, had left office in January 2017. Ambassador Lee Shin-hwa was named the South Korean Ambassado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July 2022. Her predecessor, Lee Jung-hoon, had left office in September 2017.

“안보 문제는 다른 것들과 분리하여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안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안보 상황의 개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상과 관계 개선의 길입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에 의해 무기화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CSW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의 오랜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북한에서] 인권은 편리할 때 도구화되고 무시되었으며, 편할 때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정부와 단체들은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USB 드라이브, 마이크로 SD 카드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탈북민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북한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으므로 콘텐츠의 스타일, 주제, 배포 방법을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관심사,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접근하고 싶어하는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북한 전문가)



“우리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들이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탈북자 발언)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 중 하나는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정부들이 정보 접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외교의 가능성이나 제재를 통한 의미 있는 강제의 가능성은 모두 매우 낮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도구입니다.” (북한 전문가 발언)

결론

이 보고서는 목적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재정 제공자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이 정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2014년 COI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무관심과 안주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는 과연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새로운 대응 방식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탈북민)

CSW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가 발표된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무기 프로그램의 가속화, 중국의 지속적인 강제 송환 정책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 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상황 역시 심각하며, 이와 관련된 침해는 세계 최악의 수준에 속한다. 북한 정권의 선전과 다른 신념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고문, 강제 노동, 성폭행, 처형 등 극도로 가혹한 처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이들 사이에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구상과 희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희망은 더욱 장려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정보 차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COI의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압박하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와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는 인권옹호자와 피해자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만 북한 주민들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탈북민

CSW everyone
free to believe

CSW is a human rights organisation advocating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as Christians we stand with everyone facing injustice because of their religion or belief.

T +44 (0)20 8329 0010
@CSWadvocacy
f /CSWUK
csw.org.uk

PO Box 99
New Malden
Surrey, KT3 3YF
United Kingdom

Scan the QR code
to download the
report as a PDF.
Available in English
or Korean.



© Copyright CSW 2024.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photocopying, mechanical, recording and/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CSW.